의안번호	제 805 호
의 결	2018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#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 숙 애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##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805

발의연월일: 2018년 3월 14일

발 의 자: 이숙애, 정영수, 이의영

연철흠, 장선배, 황규철

#### 1. 개정이유

독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 서문화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- 현행: 「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」
-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」
- 나. 조례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문 수정(안 제1조)
  - 지적능력 향상, 건전한 정서 함양, 독서교육 습관화
    - → 독서능력 향상, 지적・정서적 발달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
- 다. 용어정의에 지역서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)
  - "지역서점"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- 라. 협력체구축에 지역 서점 등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(안 제9조)
- 마.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붙임

나. 관계법령: 붙임

다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라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문화예술담당

마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-10호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#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"을 "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·정서적 발달을 돕고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행하여지"를 "행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유 아교육법」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"을 "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 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지역서점"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 중 "수립하고 시행하여야"를 "수립·시행하여야"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,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 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했 개 정 아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진흥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 | 제1조(목적) -----진흥법」제10조.「학교도서관 진흥법 시 제1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독서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 향상을 통하여 지적 ㆍ 정서적 발 고.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 달을 돕고. 자기주도적 학습역 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-----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학교 독서교육"이라 학생들 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 ---- 행하-----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 서태도, 지식, 기술, 흥미,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. -----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의 2. ---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유치원과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・중등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육법 | 제2조 각 호----.

3. (생략) <신 설>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 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 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 감"이라 한다)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 성 ·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제9조(공공도서관과의 협력) 학교 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0조(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)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4. "지역서점"이란 충청북도에
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
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
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/ 'II	02(27)
	무)
	21 -1 -1 -1 -1 -1 -1
ارح	<u>수립·시행하여야</u>
세	9조(협력체계 구축) 학교의 장은
	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
	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
	점,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
	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

<삭 제>

## 관계 법 령

#### □ 독서문화진흥법

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428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- 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,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8.2.29., 2013.3.23.〉
  -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8.2.29., 2013.3.23.〉
  - 1.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학교 도서관의 신설·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- 3.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
  - 4.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
  -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
### □ 학교도서관진흥법 (약칭: 학교도서관법)
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1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- 제15조(독서교육 등) ① 교육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 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8.2.29., 2013.3.23.〉
  -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#### 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16.5.10.] [대통령령 제27129호, 2016.5.10., 타법개정]

- 제9조(독서교육 등) 교육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<u>법 제15조제1항</u>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3.23.〉
  - 1.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
  - 2. 학생들의 독서수준
  - 3.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